
'24년 「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지원」 사업 공모안내서

2024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Ministry of Science and ICT



목 차

I. 사업 개요	1
1. 사업목표	2
2. 사업내용	2
3.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	3
4. 사업 추진절차	4
II. 사업 지원내용	5
1. 지원내용	6
2. 사업신청 및 접수	9
3. 세부일정 및 절차	12
4. 사업관리	12
5. 문의처	15
III. 사업 선정방안	16
1. 평가절차	17
2. 평가방법 및 기준	17
3. 기타 유의사항	21

[별첨] 전산접수 매뉴얼

I

사업 개요

1

사업목표

- 성장단계에 돌입한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의 해외 현지화 사업 지원을 통한 상용 서비스 해외 진출 가능성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 모색
-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를 보유한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기술 경쟁력 강화
-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및 현지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현지화 기반 지원 및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

2

사업내용

□ 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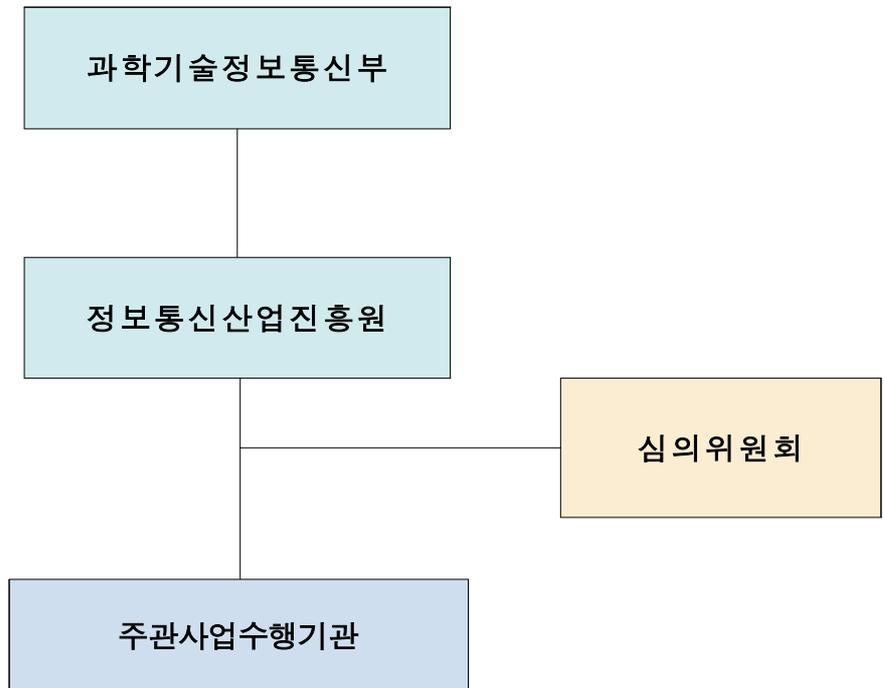
-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'24.11.30.
- (지원대상) 블록체인 기술·서비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,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등(단독)
- (지원규모) 과제당 80백만원 이내, 5개 과제 내외
 - *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60%를 지급하고, 중간점검 후 순차적으로 40% 지급
- (지원내용) UI/UX 현지화, 현지 직원 채용, 해외 마케팅 지원(브랜딩 홍보 등), 현지 전문가 자문 및 사무실 임차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 지원
- (선정방식) 서류검토 / 서면 평가 / 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 과제 선정
- (지원분야)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모델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 전 분야
 - 기존 경제적·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해외 특정 국가에 진출하는 서비스 모델
 -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ICT기술(IoT, AI, 메타버스 등)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·산업간 융합형 해외 비즈니스 모델

○ (추진일정)


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



구 분	주요 업무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 총괄 및 관리 ○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
정보통신산업진흥원 (전담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○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○ 사업관리, 예산집행 및 정산, 성과평가
심의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세부 과제별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 ○ 사업 추진범위, 예산 등 심의조정 및 확정
주관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○ 과제 진행현황 및 착수·중간·결과보고 ○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

4

사업 추진절차



* 사업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Ⅱ

사업 지원내용

1

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지원방법	○ 자유공모						
지원대상	○ 블록체인 상용화 기술·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·중소·중견 기업 등(단독) *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하며,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참여 가능(창업예정기업 불가)						
지원기간	○ 협약체결일 ~ 2024.11.30						
지원규모	○ 과제당 80백만원 이내, 5개 과제 내외 * 평가 결과, 예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 및 예산 조정 가능						
지원조건	○ 총 사업비의 70%(중견), 75%(중소)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						
지원내용	○ 해외 현지화를 위한 제반비용 지원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제반비용 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마케팅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부 인력 인건비(개발자, PM, 마케팅 등 과제 연관 인력, ※행정지원, 자료조사, 고객응대, 설문조사 등의 단순 지원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 ○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 ○ 현지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보고서 ○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(브로셔 등) 제작(동영상 제작 제외) ○ 현지 블록체인 전시회, 콘퍼런스 참가 ○ 회의비, 인쇄비,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○ 우편, 인터넷 등 공공요금 및 제세 </td> </tr> <tr> <td>현지화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인력 인건비(개발자, 마케팅, 행정지원 등 과제 연관 인력, ※행정지원, 자료조사, 고객응대, 설문조사 등의 단순 지원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) ○ UI/UX 현지화(언어 변환, 디자인 기획, 프로그래밍 등) ○ 현지 사무소(공용 오피스 등) 임대 ○ 현지 사업자등록증, 은행계좌 개설 ○ 컴퓨팅 자원 사용 수수료 ○ 국외 출장자 장기 숙소 임대(숙소 임차시 출장자 숙박료 지원 불가) ○ 투입인력 국내외 여비(항공료, 비자, 체제비, 여행자 보험) ○ 해외 특허 출원비 ○ 투입인력 전산장비(PC 등) 임차비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제반비용 항목	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부 인력 인건비(개발자, PM, 마케팅 등 과제 연관 인력, ※행정지원, 자료조사, 고객응대, 설문조사 등의 단순 지원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 ○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 ○ 현지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보고서 ○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(브로셔 등) 제작(동영상 제작 제외) ○ 현지 블록체인 전시회, 콘퍼런스 참가 ○ 회의비, 인쇄비,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○ 우편, 인터넷 등 공공요금 및 제세 	현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인력 인건비(개발자, 마케팅, 행정지원 등 과제 연관 인력, ※행정지원, 자료조사, 고객응대, 설문조사 등의 단순 지원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) ○ UI/UX 현지화(언어 변환, 디자인 기획, 프로그래밍 등) ○ 현지 사무소(공용 오피스 등) 임대 ○ 현지 사업자등록증, 은행계좌 개설 ○ 컴퓨팅 자원 사용 수수료 ○ 국외 출장자 장기 숙소 임대(숙소 임차시 출장자 숙박료 지원 불가) ○ 투입인력 국내외 여비(항공료, 비자, 체제비, 여행자 보험) ○ 해외 특허 출원비 ○ 투입인력 전산장비(PC 등) 임차비
	구분	제반비용 항목					
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부 인력 인건비(개발자, PM, 마케팅 등 과제 연관 인력, ※행정지원, 자료조사, 고객응대, 설문조사 등의 단순 지원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 ○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 ○ 현지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보고서 ○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(브로셔 등) 제작(동영상 제작 제외) ○ 현지 블록체인 전시회, 콘퍼런스 참가 ○ 회의비, 인쇄비,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매 ○ 우편, 인터넷 등 공공요금 및 제세 						
현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인력 인건비(개발자, 마케팅, 행정지원 등 과제 연관 인력, ※행정지원, 자료조사, 고객응대, 설문조사 등의 단순 지원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) ○ UI/UX 현지화(언어 변환, 디자인 기획, 프로그래밍 등) ○ 현지 사무소(공용 오피스 등) 임대 ○ 현지 사업자등록증, 은행계좌 개설 ○ 컴퓨팅 자원 사용 수수료 ○ 국외 출장자 장기 숙소 임대(숙소 임차시 출장자 숙박료 지원 불가) ○ 투입인력 국내외 여비(항공료, 비자, 체제비, 여행자 보험) ○ 해외 특허 출원비 ○ 투입인력 전산장비(PC 등) 임차비 						
* 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관련 사업비만 인정 되며, 사업 관련 여부에 대한 증빙은 수행 기관에서 증명							

□ 지원조건

- (민간매칭)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·기관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매칭(현금·현물)을 하여야 함

※ “총사업비 =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” 으로 구성되며,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◆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1. 출연금 등 지원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공기업 및 기타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%이내

[참고] 기업규모 구분 (대·중소·중견·공기업·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)

1.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2. “중견기업”이라 함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3. “공기업”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임
4. “대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»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», 「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», 「금융 및 보험,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」 등을 말한다.
5. ‘기타기업’이란 위 1)중소기업, 2)중견기업 3)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

2.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공기업 및 기타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%이상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%이상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%이상	필요시 부담

1.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
2. “중소기업”이라 함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3. “중견기업”이라 함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4. ‘공기업’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임
5. “대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»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», 「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», 「금융 및 보험,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」 등을 말한다.
6. ‘기타기업’이란 위 1)중소기업, 2)중견기업 3)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

□ 사업비 산정기준

- 사업 수행 기간은 6개월 기준으로 산정

- 블록체인 컴퓨터 자원(온오프라인 서버 등)은 ‘공공요금 및 제세’ 항목으로 산정
- 블록체인 해외현지화에 필요한 컴퓨팅자원* 비용은 해외 현지화와 관련된 경우만 지원

* (컴퓨팅 자원) 온오프라인 서버(블록체인, 웹, api, 암호화장비(VPN))로 해당 서버에 대한 세부내역(CPU, HDD, 메모리 등)이 포함된 세부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제외

- **(결과물 활용)** 지원받은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(콘퍼런스, 성과공유회, 협력상담회, 실태조사 등)

□ 선정 및 협약 제외대상

○ 지원사업 선정 제외대상

- 과제 참여인력이 특수 관계(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, 친인척 임원, 대주주 등)인 경우 또는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,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우리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가 「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지원 사업」에 제출한 과제와 동일 과제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우리원 「'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」 및 「'24년 블록체인 해외컨설팅 사업」에 지원한 과제는 과제 선정여부 상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「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지원 사업」에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-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정의상의 '가상자산'에 관련한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단, 대표이사가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, 제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)

○ 과제선정 및 협약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·협약 취소 가능 대상

- 지원과제(주관/참여)와 유사과제로 접수마감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(기 지원 받은 과제와 분야 또는 영역 등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 하며, 주관기관에서 중복이 아님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할 시 유사과제 범주에 포함)
- 과제 참여인력이 특수 관계(기업대표 자녀와 배우자, 친인척 임원, 대주주 등)인 경우 또는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인 경우
- 우리원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과제가 「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지원 사업」에 제출한 과제와 동일 과제인 경우
- 우리원 「'24년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」 및 「'24년 블록체인 해외컨설팅 사업」에 지원한 과제는 과제 선정여부 상관 없이 동일 또는 유사 과제를 「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지원 사업」에 지원한 경우
-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 대표 등이 채무불이행자인 경우
-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

□ 기타 사항

- (결과물 활용) 과제 지원받는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(컨퍼런스, 성과공유회, 만족도 및 성과 조사 등)

2

사업신청 및 접수

□ 사업설명회 개최

- '24. 4. 12(금) 14:00, 서울 오픈업센터(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 우체빌딩 2층)
- * 상기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- 공고기간: '24.3.25(월) ~ 4.26(금) 15:00까지(www.nipa.kr 알림마당 - 사업공고 참조)
- 신청 방법
 -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, 제출서류, 신청양식,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요령에 대해서 확인 최종 제출 요망
 - NIPA 사업지원스마트시스템(SMART)을 통한 온라인 신청
 - *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 - * NIPA SMART시스템(<https://smart.nipa.kr>) > 로그인(과제 총괄책임자) > “접수” > “과제접수” > “2024년 블록체인 해외 현지화 지원” > “과제신청” 클릭
 - * 세부내용은 별첨 전산접수 매뉴얼 참조

□ 사업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

<사업신청서 전산접수시 유의사항>

- 사업신청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수행책임자(총괄책임자) 명의로 가입
-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과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 후 제출
- 사업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,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, 입력내용은 사업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
-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
- 전산접수는 사업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, 최종저장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.
- ※ 전산접수 마감시한 : **'24. 4. 26(금), 15:00까지**
- ※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,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 2~3일 전에 접수완료 추천
- ※ 전산 시스템 문의 : ☎ 070-5151-8239

□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

구 분	첨부 서류 목록
제출서류	< 공통(주관, 참여) 제출서류 >
	○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	○ 사업신청서(주관에서 대표로 제출)
	○ 사용인감계(주관에서 대표로 제출)
	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
	○ 협약서(과제수행기관 참여의사, 신청자격, 중복지원, 특수관계, 현금출자납입(해당시), 설문조사 업무협조)
	○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
	○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	○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(해당시)
	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 단체(고유번호: 82) 및 대기업을 증빙하는 증빙 서류
	※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(증빙서류) 기간이 유효하여야 함(기한 만료된 인증서(증빙서류)는 서류 미제출로 간주)
	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의 재무제표(최근 3년, '21년~'23년)
	○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
○ 4대 보험완납증명서	
○ 국가 R&D성과 연계 증빙서류(개요, 증빙자료 등)	
○ 신청과제 자기점검표	

- * 모든 서류는 **원본대조필 날인 후 전산접수**하며,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* 사업신청서는 **주관 및 참여(공급·수요)기업들의 필히 직인 날인 후**,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**50페이지 이상**으로 작성하여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
※ 중요

- **“블록체인해외현지화 지원과제명 주관기관명”** 폴더를 생성하고, 하위폴더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폴더를 따로 생성하여, 제출서류(파일) 저장 및 제출
- 서류 제출시 파일(폴더)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 뒤, 압축(ZIP)하여 제출

필수	0. 회사명_공통_제출서류체크리스트
	1. 회사명_공통_사업신청서(직인 날인)
	2. 회사명_공통_인감증명서(사용인감계)
	3. 회사명_공통_사업자등록증
	4. 회사명_공통_확약서(과제수행기관 참여의사, 신청자격, 중복지원, 특수관계, 현금출자납입, 설문조사 업무협조)
	5. 회사명_공통_참여인력참여확인서
	6. 회사명_공통_개인정보이용동의서
	7. 회사명_공통_외부위촉인력참여동의서
	8. 회사명_공통_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(대기업·비영리기관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	9. 회사명_공통_재무제표(최근 3년, '21년 ~ '23년)
	10. 회사명_공통_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	11. 회사명_공통_4대보험완납증명서
12. 회사명_공통_자기점검표	
선택	13. 국가 R&D성과 연계 증빙서류(개요, 증빙자료 등)
	14. 위서류(0~13번) 외 제출하는 참고자료 일체

3

세부일정 및 절차

단 계	내 용
사업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 지원 계획 공고 : '24. 3. 25(월) - 정보통신산업진흥원(www.nipa.kr) 홈페이지 게재 ○ 사업설명회 - '24. 4. 12(금) 14:00, 서울 오픈업센터(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, 우제빌딩 2층)
사업신청서 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정 양식에 의거한 “사업신청서” 접수 - 공고기간: '24. 3. 25(월) ~ 4. 26(금) 15:00까지 - 전산접수: '24. 4. 12(금) ~ 4. 26(금) 15:00까지
적합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※ 검토 항목: 접수내역, 신청자격,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
서면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일자: '24. 5월 ○ 평가방법: 서면 평가 ※ 평가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
발표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일자: '24. 5월 ○ 평가방법: 발표 평가
우선협상과제 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선협상과제 확정: '24. 5월
심의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계획, 예산, 추진범위 등 심의·조정: '24. 6월
협약체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약 체결 : '24. 6월 - 사업범위/사업비검토 및 조정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협약체결

*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4

사업관리

□ 과제 수행 관리

- 과제 종료 시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, 산출물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, 회계검토 보고서 및 NIPA 요청자료 제출
 - ※ 세부 제출 자료는 과제 특성에 따라 추후 통보
- 중간보고 시 중간보고서 및 NIPA 요청자료 제출
- 과제 수행 도중에 NIPA에서는 현장실사 및 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

필요시 시행할 예정이며, 주관기관은 진행현황보고서, 사업비 사용 중간실적 등을 제출해야 함

○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

-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
-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-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,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위원회, 중간보고,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
-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및 부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

○ 과제 수행 변경

- 과제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과제 수행계획의 일부를 변경·요청할 수 있으며,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(협약종료 1개월 이전)

□ 참가기업 필수 과업

○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수행하고, 수행 결과 및 증빙자료를 결과보고서 제출

- 서비스 해외진출 지역 마케팅 활동(현지 상담회, 세미나, 네트워크 행사 등) 개최 (1회 이상) 또는 참석(2회 이상)
- 사업 투입인력 현지 체류 및 실무 수행(PM: 30일 이상, 실무담당: 60일 이상)
- 현지 사무소(공유 오피스 활용 등) 운영,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은행계좌 개설
- 현지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보고서 및 향후 해외 현지화 계획(2년) 제출
- 해외 블록체인 기술특허 출원 1개 이상

□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

○ 중간 보고

- 제출 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 개최
- **중간점검(중간평가 등)시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음**

○ 결과 평가

- 과제 완료시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“성공” 또는 “실패”로 평가됨
- 90점 이상(“매우 우수”), 80~89점(“우수”), 70~79점(“보통”)은 “성공”으로 평가
- 60~69점(“미흡”), 60점미만(“매우미흡”)으로 “실패”로 평가받은 과제는 제재 등급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,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구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조치

※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- **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**

□ 적용 규정

구분	내용
· 사업비 구성 및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·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
· 평가 및 성과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·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·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
·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「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」 「공공재정 환수법」 등을 적용

※ 이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,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

□ 기타 규정사항

- 제출된 일체의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과제신청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
- 수행기관(주관·참여) 과제수행 중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, 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, 문제 발생시 수행기관에서 책임짐을 원칙으로 하며, 개인정보보호 위반시 지원사업에서 제재 될수 있음

5 문의처

구분	담당자 (이메일)	TEL
사업관련 내용 문의	SW산업팀 정기수 수석 (gjung@nipa.kr) SW산업팀 안지환 책임(jasonahn1202@nipa.kr)	043-931-5372 043-931-5084
전산등록 관련 문의	유지보수팀(smart@nipa.kr)	070-5151-8239

Ⅲ

사업 선정방안

1

평가 절차

□ 선정절차

- 사업신청서의 적합성검토(서류검토 등) 및 서면평가/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후,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

구분	평가자	평가 방법	비고
서류검토	내부검토	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,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	· 제출서류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시 탈락
서면평가	평가위원회 (외부전문가)	제출된 사업신청서 평가	· 산술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※ 1.5배수 이내 선정
발표평가	평가위원회 (외부전문가)	사업신청서 및 주관기관/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발표	· 서면평가 통과 과제 ·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

2

평가방법 및 기준

① 서류검토(적합성 검토)

- (개요)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누락,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
- (평가대상) 접수과제
- (검토방법) 사업신청서, 첨부·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내부 검토
- (주요 검토항목) 접수내역, 신청자격,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

구분	검토항목
접수	○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 누락 여부
관련 규정	○ 과제중복 여부 (*기 지원분야 동일 서비스모델 및 유사 중복과제 제외 등)
	○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
	○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(대표자,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)
	○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

* 제출서류 누락 시,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
- **(과제 중복여부 확인)** 주관기관과 참여공급기관은 블록체인 관련 정부 과제 수행이력을 제출(5년간)해야 하며, 제안한 과제가 기존 수행한 과제와 동일과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주관기관에게 있음
 - 동일 또는 중복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이후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
 -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함을 증명하였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나, 타당성을 증명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
- **(해외 진출 가능성 확인)** 주관기관이 해당 국가에서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, 그 증명의 책임은 주관기관에게 있음
 - 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의 미비로 인하여, 적합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음

② 선정평가

1) 서면평가

- **(개요)** 사업신청서 등에 의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
- **(평가대상)**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
- **(평가방법)**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 - ※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
- **(평가위원)** 관련분야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과제 선정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1.5배수 이내 선정
 - ※ 평가는 전자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위원 선정은 NIPA 평가지원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
 - ※ 서면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- **(평가기준)** 사업이해 및 준비도,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, 사업비 사용 계획 적정성, 사업 확장성, 기타 등

평가 구분	평가 항목 및 기준		평가 점수
사업이해 및 준비도(30)	사업이해도	○ 수행 목표와 내용 이해도	5
	사업준비도	○ 해외 현지화 계획에 대한 상세 전략	10
	사업적합도	○ 국내기업 해외진출 역량에 따른 사업 적합도 - 보유 블록체인 상용화 BM 및 기술 준비도	15
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(25)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	○ 사업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, 협력체계, 추진일정 ○ 세부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	10
	사업 추진의지	○ 사업수행기관, 참여인력 수행 역량(전문성) ○ 해외 현지화 준비 여부, 중장기 확산전략 제시여부 ○ 사업수행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	15
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(20)	사업비 적정성	○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 사용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	20
사업 확장성 (20)	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	○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- 시장확대(진출) 가능성, 매출, 투자유치 가능성 등	15
		○ 핵심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	5
기타(5)	과제준비 노력도	○ 제출서류 양식 준수 여부	5
합 계			100

※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구분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(동점 시, 정부 R&D 성과 연계 과제 우대)

2) 발표평가

- (개요)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 선정
- (평가대상) 서면평가 통과 과제(주관·참여 기관)
- (평가방법)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
 -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

※ 통과기준은 평가점수 70점 이상

○ (평가위원) 관련분야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인 이상

※ 평가는 전자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위원 선정은 NIPA 평가지원팀에서 일괄 선정하여 위촉

○ (평가기준) 사업이해 및 준비도,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, 사업비 사용 계획 적정성, 사업 확장성, 기타 등등

평가 구분	평가 항목 및 기준		평가 점수
사업이해 및 준비도(30)	사업이해도	○ 수행 목표와 내용 이해도	5
	사업준비도	○ 해외 현지화 계획에 대한 상세 전략	10
	사업적합도	○ 국내기업 해외진출 역량에 따른 사업 적합도 - 보유 블록체인 상용화 BM 및 기술 준비도	15
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(25)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	○ 사업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, 협력체계, 추진일정 ○ 세부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	10
	사업 추진의지	○ 사업수행기관, 참여인력 수행 역량(전문성) ○ 해외 현지화 준비 여부, 중장기 확산전략 제시여부 ○ 사업수행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	15
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(20)	사업비 적정성	○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 사용계획 구체성 및 타당성	20
사업 확장성 (20)	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	○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- 시장확대(진출) 가능성, 매출, 투자유치 가능성 등	15
		○ 핵심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	5
기타(5)	과제준비 노력도	○ 제출서류 양식 준수 여부	5
합 계			100

※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구분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(동점 시, 정부 R&D 성과 연계 과제 우대)

③ 사업비 심의·조정

- (개요) 발표평가결과 및 지원가능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
- (심의·조정대상) 발표평가 선정과제
- (심의·조정방법) 발표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범위 및 예산조정(안)을 확정된 후, 최종 지원과제 확정
- (심의·조정위원) 회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7인 내외로 구성

3 기타 유의사항

□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

- 과제 수행기관(주관기관)은 심의 의견 통보 후,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* 체결
 - * 협약체결 전 정부 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(계약기간: 협약체결일 ~ 협약종료일+150일) 제출 필수
 - ** 총 사업비 규모 협약체결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예산 상황,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변동(감액) 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
 - ※ 추후 협약체결 확정시 「정보통신·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」 제29조(협약의 체결)에 의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 시 협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사업 수행기간 : 협약체결일 ~ '24. 11.30(토)까지

□ 사업비 편성 및 관리

- 과제 수행기관은 사업비(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 현금)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
 - * 직접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,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
- 사업비 편성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결과 도출을 위해 편중된 예산편성 지양
 - * 인건비 정부출연금 기준 50% 이하
 - * 사업비검토 심의위원회의 검토후 최종 비목별 편성금액 조정 및 확정
- 민간부담금(현금 또는 현물 사업비) 잔액이 발생한 경우, 반납시 정부와 민간

비율대로 반납함

□ 기 타

- 수행과제의 성과 활용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주관기관은 과제 종료 연도 부터 3년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후속 조치 관련하여 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
- 제안과제가 클라우드를 적용하고자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
-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NIPA(전담기관)의 사업관리시스템 활용해야 함